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하며, 이하 동일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 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고(단,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시 전자서명하여 제출한 서약서로 같음),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석유공사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직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대상부서에 보직된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2]”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한국석유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에정액)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담합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로서 한국석유공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금액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금액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석유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5%
2. 계약상대자 : 낙찰금액의 10%

③단가입찰의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낙찰금액(또는 입찰금액) 이라 함은 낙찰단가(또는 입찰단가)에 시방서 등에 명기된 구매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입찰참가자는 한국석유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배상액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간을 도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지연이자 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상액 납부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석유공사가 지급할 타 대가에서 배상액 및 지연이자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입찰참가자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1. 낙찰자 결정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201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입찰특별유의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서식 1) 입찰참여업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석유공사의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다른 업체와 합의하에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업체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가 위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관계법령,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제한,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지 등 조치를 받더라도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명 :
- 주 소 :
- 대표자 : (인)

(서식 2) 공사 계약담당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한국석유공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정도경영을 구현하고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공사의 물품구매·용역·공사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인)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하며, 이하 동일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석유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계약상대자는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담합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로서 한국석유공사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금액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금액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석유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단가입찰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이라 함은 낙찰단가에 시방서 등에 명기된 구매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한국석유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배상액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간을 도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지연이자 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상액 납부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석유공사가 지급할 타 대가에서 배상액 및 지연이자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1. 낙찰자 결정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